

## 在所者の 法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姜 求 眞\*\*

### I. 緒 論

한 나라의 法秩序는 法制度와 法意識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국민의 法意識은 법의 形成 및 執行을 큰 테두리에서 결정한다. 국민의 法意識은 따라서 法制度가 작용하기 위한 背景 혹은 與件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法意識이 法執行者의 그것과 괴리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 또한 階層간의 분열이 심할수록 각 社會集團의 法意識은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만약 사회집단마다, 法에 대한 認知的·情緒的 態度的 차이가 현격하다면 法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그 實行過程에서 많은 試行錯誤와 無理를 수반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法實現의 全過程이 사회 각집단의 下位文化(Sub-culture)에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어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法社會學的 研究(Socio-Legal Study)의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 한 시도로서 在所者(=受刑者)의 法意識에 대하여 다루어 보려 한다. 在所者의 法意識을 문제삼는 데에는 다음의 몇가지 意義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犯罪集團은 대체로 자신들의 上位文化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規範定向을 일으켜, 이는 종종 公式的인 規範定向과 對立된다는 것이 일찍부터 지적되었다.<sup>(1)</sup>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국가의 刑事司法에 의하여 포착된 犯罪集團인 在所者 역시 他集團과는 다른 規範定向 및 價値觀念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推定이 가능하다. 물론 在所者의 法意識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측면들이 곧 犯罪下位文化와 관련된다고 설부터 단언할 수는 없다. 犯罪下位文化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文化的 構成員들의 상호작용 가운데에서 그 내용이 표현되는 것이지, 그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단절된 矯正所 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文化的 背景 속에서 길러진 意識體系는 별 변화없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在所者의 規範定向, 價値體系는 일반인의 그것과 얼마나 相異하며 그 特徵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犯罪學의 한 課題인 동시에 刑事政

\* 이 論文은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後援에 의한 研究論文임.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教授

(1) Cloward, Richard and Ohlin, Lloyd, *Delinquency and Opportunity: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Chicago: Free Press, 1960); Cohen, Albert A.,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Chicago: Free Press, 1955).

策的 研究의 한 先決要件인 것이다.

둘째, 在所者는 既存의 法規와 충돌하며 既存의 法執行機關과 대립적 입장에 놓여 있는 集團이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法에 대한 態度는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며 나아가 法規 및 法執行의 諸矛盾에 대한 예리한 관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在所者의 法意識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法制度上的 문제점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意義를 충분히 살리려면 다음의 事項들이 특히 유의되어야 한다. 첫째, 在所者 集團이 類型別로 분류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指標犯罪(Index Crime)<sup>(2)</sup>와 高級犯罪(White Collar Crime)가 유사한 法意識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暴力犯과 政治犯이 동일한 법의식을 共有한다고는 도저히 생각될 수 없다. 따라서 犯罪의 性格에 따라 유형화하여 조사하여야 법의식에 대한 보다 적절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特殊集團으로서의 在所者集團의 法意識의 特色은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뚜렷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比較集團이 設定되어야 한다.

그러나, 本稿의 목적은 보다 제한적이다. 分析에 이용하려는 資料가 在所者職業訓練制度의 實態를 調査研究<sup>(3)</sup>하는 기회에 부수적으로 在所者의 法意識을 조사하여 본 것인만큼 개괄적인 파악에 그쳤다. 따라서 在所者集團을 유형별로 분류하지도 않았고, 다른 集團과의 비교는 기존의 他研究를 참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在所者라는 特殊集團의 法意識에 대한 최초의 接近으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II. 調査研究의 方法 및 對象

### 1. 標本抽出과 資料蒐集

앞서 말했듯이 本稿는 在所者의 職業訓練의 實態를 조사연구하는 기회에 在所者의 法意識을 아울러 알아보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러므로 調査對象은 職業訓練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在所者集團을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을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集團으로 나누어 전국 13개의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355명에 대하여 設問紙調査를 실시하였다. 同設問紙는 50명의 재소자에게 인터뷰와 예비 설문을 통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表 1> 調査集團의 內容

第 1	集 團	精銳職業訓練集團 90名(初犯)
第 2	集 團	公共職業訓練集團 153名(初犯)
第 3	集 團	職業訓練을 받았던 再犯集團 112名

(2) 指標犯罪(Index Crime)라 함은 犯罪統計를 위해 Uniform Crime Reports에 다루어지고 있는 殺人, 強盜, 強姦, 竊盜 등 7가지 대표적 범죄를 말한다.

(3) 姜求真, 受刑者職業訓練制度의 實態에 관한 研究(I)·(II), 서울大 法學, 제20권 2호(1980.5), 同 제21권 1호(1980.12)

그런데 이 3개의 集團 중 직업훈련의 實態에 대한 態度를 측정함에 있어 가장 의미있는 집단은 第3集團, 즉 현재의 교도소에 入所하기 전 다른 矯導所에서 初犯으로서 適性檢査를 거쳐 所定の 직업훈련을 마치고 사회에 일단 복귀하였다가, 다시 범죄하여 현재 교도소에 복역중인 再犯集團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 集團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한 調査를 실시하였다. 다만 法意識과 관련하여 <表 1>과 같은 분류는 논리적 근거가 별달리 없다. 第3集團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이들이 在所者의 法意識을 가장 잘 대변한다는 점이 아니라 순전히 조사의 편의상 그러한 것이다.

## 2. 應答者의 特性

犯罪人이건 아니건 간에 父·母의 役割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굳이 西歐 여러 나라와 比較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固有의 實情을 보더라도 開港과 더불어 우리나라 固有의 大家族制度는 점차 와해되기 시작하고 小家族制度로 移行해가는 경향이 있음은 주지의 事實이다. 그러므로 依存度와 感受性이 강한 유년기에 父母가 그 子女에게 끼치는 영향이란 거의 排他的이고 獨占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이후 상당기간 동안 犯罪人의 行動方式과 形態를 따르도록 혹은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決定的으로 重要한 要素가 된다. 여기에서 孟子와 荀子의 性善說과 性惡說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어느 어린아이도 태어날 當時부터 非行의 習性을 반드시 가지도록 先天的으로 決定되지 않았을 것이며 法의 違反者가 되도록 決定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父母야말로 어린아이의 方向을 設定할 제 1의 機關구실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在所者의 父母를 알아 보고자 하는 理由를 발견하게 된다.

비록 個個의 家族이 아이들을 非行者 내지 犯罪人이 되지 아니하도록 양육하려 하나 現代와 같은 복잡한 社會에서 이것이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社會가 복잡하여지기 以前에는 家族은 서로 단순하면서도 調和로운 文化속에서 유지될 수 있었으나 現代의 경우 이러한 狀態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우선 父母는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며, 그 日常生活에서 意見을 달리하게 된다. 더우기 이들은 子女 문제에 관하여 意見을 달리하므로 이것이 家庭의 調和를 저해하는 가장 큰 要因이 된다. 더우기 이들 在所者들은 兩父母 俱存이 38名(33.9%), 片父生存이 9名(8.0%), 片母生存이 29名(25.9%), 兩父母 모두 안계심이 36名(32.1%)이었다. 이를 兄弟姊妹와 관련하여 보면

父母를 알고 兄弟姊妹를 모르는 사람 12名  
 父母를 모르고 兄弟姊妹를 아는 사람이 22名  
 父母와 兄弟姊妹 모두 모르는 사람이 12名이다.

父母의 役割과 在所者의 婚姻狀態는 有意度 0.1%의 수준에서 比較的 높은 相關係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未 婚	既 婚	離 婚	別 居	同 居	合 計
父 母 俱 存	30	1	1	1	13	46
片 父	4	0	1	0	2	7
片 母	19	2	0	0	4	25
모두 안 계심	14	12	3	1	4	34
合 計	67	15	5	2	23	112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家族과 同居與否인데 有意度 0.00% 수준에서 相關係數(67.5%)이며 家族과 別居하는 28名中 19名이 父母를 알 수 없거나 안계신다고 應答하고 있으며 9名(33.1%)이 父 또는 母가 계시다고 應答하고 있다. 그리고 46名中 19名이 父母끼리 不和狀態를 보여주고 있다. 어렸을 때 父·母間에 對立이 있었던 在所者는 23名(20.5%)에 달하며 父母의 학대가 심했던 在所者도 18名(16.1%)에 달하고 있다.

都市生計費인 年 11萬圓 以上の 家計 35家口中 25家口가 父 또는 母가 現存한 狀態이고 보면 父母가 계시는 편이 安定的이라는 것은 家族의 經濟生活部門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부모가 계신 쪽은 62 : 16의 비율이며 안 계신쪽은 30 : 4이다.

在所者の 教育水準을 살펴보면 父·母가 계신 在所者가 13名으로 高卒 在所者 14名の 92.8%를 차지하며 無學인 在所者 6名中 5名이 父母가 모두 안계신 편에 속한다. 무학 : 국교 : 중교 : 고교가 부모가 계신편은 1 : 44 : 20 : 13인데 反하여 안 계신편은 5 : 21 : 7 : 1이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家族과 別居하는 在所者는 8名으로서 17.8%에 속한다. 그리고 아이들 문제가 있는 집은 단 1세대 뿐 이들이 子女를 갖는 것과 生計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가 여부는 생계책임이 있는 경우 아이 있음 : 아이 없음이 16 : 21며 生計責任이 없는 경우 아이 있음 : 아이 없음이 51 : 24이다.

家屋의 所有形態를 살펴보면, 父母가 계신쪽은 自家 : 전세 : 친지 : 집없음이 36 : 35 : 3 : 4인데 반하여 안계신 쪽은 4 : 19 : 3 : 8이었다.

이들 모두 112名中 未婚이 67名이며 既婚이 15名, 離婚 5名, 別居 2名, 同居 23名이며, 이들 未婚을 제외한 45명중 子女없음이 13名, 子女 1명이 17名, 子女 2명이 7名, 子女 3명

子女의 數

아 들	딸	合 計	在所者	아 들	딸	合 計	在所者
0	1	1	11	1	2	3	1
1	0		6	2	1		3
0	2	2	2	2	2	4	2
1	1		3	3	1		1
2	0		2	3	2		5

이 4名, 子女 4명이 3名, 子女 5명이 1名이었다.

### 3. 資料分析法

資料는 百分比에 의한 서술적 비교를 주로 사용하여 분석·해석하였다.

## III. 在所者의 法意識

### 1. 法執行機關에 관한 意識

법을 사회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제도로 볼 때 법은 實定規範의 總體 이상의 것이다. 단순히 法規範만으로는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그를 解釋, 適用, 執行할 法運用者가 필요하다. 보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법은 실정법의 체계가 아니라 法運用者의 行爲와 關聯者의 行爲 사이의 相互作用인 것이다.<sup>(4)</sup> 法意識이란 결국 법운동자의 행위를 통해 具體化된 法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認知-一情緒의 反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의식은 일차적으로 法運用者集團에 대한 意識으로 나타나게 된다. 在所者集團의 경우에는 犯罪行爲를 계기로 搜查·訴追·裁判·執行의 全段階에 걸쳐 연속적으로 충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성질상 法執行機關에 대한 의식은 훨씬 분명하게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法執行과 관련된 職務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法官·檢事·警察官·辯護士에 대한 在所者의 反應을 알아보기로 한다.

法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체로 법관은 공정한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반응한 것을 보면 찬성쪽이 41.1%, “절대 반대”와 “대체로 반대”가 각각 9.8%와 21.4%로 나타났다. 거의 1/3에 해당하는 在所者가 法官이 公正하지 못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27.7%까지를 합하면 거의 60% 가까운 재소자들이 법관의 公正性을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소자가 法官의 判決에 의해 현재와 같은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법관에 대해 다소 非好意的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도 不信의 정도가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檢事に 대한 信賴의 程度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30% 정도가 “검사는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고, 4.5% 정도가 그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警察官에 대한 인식은 매우 否定的인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관은 대체로 정직하다”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4.5%와 12.5%만이 각각 “절대 찬성”과 “대체로 찬성”으로 대답하여 80% 이상이 경찰관이 정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28.5%는 “절대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不信意識은 被告人의 辯論을 담당하는 辯護士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변호

(4) Karl Llewellyn, *Jurisprudence: Realism in theory and practice* (Chicago University Press, 1962), pp.31~40.

사들은 대체로 양심적이다"은 항목에 대해 28.6%만이 찬성하고 42% 가량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不信의 정도는 경찰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檢事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동일한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이 조사에 의하면 辯護士 역시 法官이나 檢事 못지 않게 불신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다. 또한 警察에 대한 반응에서 "모르겠다"는 17%에 불과하지만, 辯護士의 경우에는 30% 가까이 나타나는 바, 이는 변호사와 접촉할 기회가 실제로 제한적이라는 데 기인하는 것 같다.

이상에서 보여지듯 法을 다루고 있는 集團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적고 부정적인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警察官에 대한 不信은 법관, 검사, 변호사 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야말로 재소자들을 가장 먼저 연행, 구속한 사람들이고 가장 에리하게 충돌하는 사람들인 탓도 있지만, 경찰관의 "정직성"에 대하여 압도적 다수가 否定的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것은 犯罪人 측에서 경찰관의 法執行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경찰관이 집행하는 法 자체에 대한 懷疑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면도 있다. 또한 法執行者가 法違反者에게 자신의 행위의 正當性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犯罪人이 체포되어 刑事訴追를 받더라도 矯正的 效果를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表 2〉 대체로 법관은 공정한 편이다.

절대 찬성	17.9%(20명)
대체로 찬성	23.2%(26명)
모르겠다	27.7%(31명)
대체로 반대	21.4%(24명)
절대 반대	9.8%(11명)

〈表 3〉 검사는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절대 찬성	8.9%(10명)
대체로 찬성	21.4%(24명)
모르겠다	25%(28명)
대체로 반대	23.2%(26명)
절대 반대	21.4%(24명)

〈表 4〉 경찰관은 대체로 정직하다.

절대 찬성	4.5%(5명)
대체로 찬성	12.5%(14명)
모르겠다	17%(19명)
대체로 반대	37.5%(42명)
절대 반대	28.5%(32명)

〈表 5〉 변호사들은 대체로 양심적이다.

절대 찬성	16.1%(18명)
대체로 찬성	12.5%(14명)
모르겠다	29.4%(33명)
대체로 반대	28.6%(32명)
절대 반대	13.4%(15명)

## 2. 階層과의 관계에서 본 法意識

법이 개개인의 社會經濟的 地位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法の 葛藤解決的 機能을 원활히 수행함과 동시에 법의 權威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법이 社會的 地位나 當事者의 經濟的 階層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용된다면 법의 권위는 실추되고 국민의 法的 疎外感(Legal Alienation)을 야기시킬 것이다. 在所者集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在所者들의 경우 貧富에 따른 法執行의 不平等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사는 사람들은 법을 어겨도 가난한 사람들보다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찬성이 33%, 반대가 50%정도로 응답하고 있어, 다수의 재소자들이 법 집행의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1/3에 달하는 재소자들이 法的 疎外感을 인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정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평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는 문항에 대하여 “절대 찬성”이 23.2%, “대체로 찬성”이 17%가 되어, 응답자의 40% 가량이 貧富와 관련한 差別的 待遇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응답자의 1/3 정도가 차별적 대우를 느끼고 있고 또 26.8%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누구나 법정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슷한 경향은 “돈만 충분하다면 법정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在所者의 反應에도 나타나고 있다. “절대 반대”와 “대체로 반대”가 각각 22.3%와 19.6%를 차지하여 약 42%가 법정에서의 金錢萬能의 態度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으나, 역시 1/3 정도의 응답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고 또 26%정도의 응답자도 그를 강력히 否定하지도 않고 있다. 여기서 아직도 법정에서의 金錢萬能思想이 깊히 뿌리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無錢有罪 有錢無罪의 思想)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階層과 관련된 在所者의 法意識은 법집행자에 대한 인식보다는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관에 대한 特殊敵對的 態度를 제외하면 어디까지나 경미한 차이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항목에서나 1/3에 이르는 비율이 계층에 따른 법의 차별적 운용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法的 疎外感은 在所者集團의 相對的 剝奪感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要素가 될 수 있다.

이전의 다른 研究結果와 비교해 볼 때 계층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在所者集團이 국민 일반의 법의식보다 오히려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색으로 나타난다. 물론 調查方法과 對象, 調查時期가 다르고, 본 연구에서 比較集團을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설블리 일반화 하기에는 다소 난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양집단의 법의식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다.

林煥燮 교수가 1972년에 全國標本, 大學生標本, 法律職從事者標本の 3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法意識에 관한 조사연구<sup>(5)</sup>를 보면, 계층과의 관계에서 국민들은 法的 妥當性, 公正性을 크게 懷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 60%의 국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보다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법이 “빈부귀천에 따라” 不公平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국민이 82%에 달하고 있다. 또한 “법을 잘 모

(5) 林煥燮, “韓國人の 法意識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서울大 法學, 제15권 1호(1974), pp.47~8.

르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도 86%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고 느끼는 국민이 65%이며, 법조인 집단의 77%와 대학생 집단의 84%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심지어 “법은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느끼는 국민이 63%(대학생 71%, 법조인 58%)에 달하고 있다. 즉 情緒的 側面에서 볼 때, 권력층과 부유층에 유리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국민의 法的 疎外感이 매우 높고 법의 妥當性, 公正性에 대한 信賴感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본 조사에서 “어떤 법은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문항과 유사한 것을 측정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응답자의 23%가 찬성하고, 29%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法の 公正性을 인정하는 쪽이 약간 우세하다. 그러나 47%나 되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모르겠다”로 반응하여, 전체적으로 少數特權層의 法的 利害關係에 대해 심한 적대감을 볼 수 있다.

유사한 결론은 梁承斗교수의 연구에도 나타난다.<sup>(6)</sup> “돈 많은 면장과의 재판에서 이기는 쪽은?”이라는 문항에 대해 過半數인 51.2%가 돈 많은 면장이 이긴다고 응답하고, 올바른 쪽이 이긴다가 43%, 가난한 농부가 이긴다고 대답한 사람은 1%밖에 되지 않았다. 즉 다수가 正義보다 地位·富·權力이 재판에서 이기리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같은 경향은 同研究의 “법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하는가”에 대한 반응에도 나타난다. “국민을 위하여” 제정한다는 측이 1965년과 1979년 사이에 67.1%에서 61.5%로 감소한 반면, “나라를 위하여”는 10.9%에서 16.8%로 증가했고, 특히 놀라운 사실은 “권세있는 사람을 위하여”가 0.8%에서 10.3%로 크게 증가한 점이다.

이렇듯 다수의 응답자들이 法制定과 法執行에 있어 법의 公正性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法制度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要因으로 작용하리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法制度는 社會文化的 背景과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法制度에 대한 批判的 表現은 곧 한국사회의 構造的 矛盾과 文化的 葛藤의 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와 기왕의 諸研究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葛藤相이 매우 심각하게 의식되고 있고 그러한 인식이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統合을 그림자지우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表 6〉 잘 사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가난한 사람들보다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다.

절대 찬성	20.5%(23명)
대체로 찬성	12.5%(14명)
모르겠다	17.9%(20명)
대체로 반대	18.8%(21명)
절대 반대	30.3%(34명)

〈表 7〉 법정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평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절대 찬성	23.2%(26명)
대체로 찬성	17%(19명)
모르겠다	26.8%(30명)
대체로 반대	22.3%(25명)
절대 반대	10.7%(12명)

(6) 梁承斗, “우리나라 傳統的 法意識과 그 變化에 관한 研究”, 延世大 法律研究(第二輯), p.374.



〈表 8〉 돈만 충분하다면 법정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절대 찬성	16.1%(18명)
대체로 찬성	16.1%(18명)
모르겠다	25.9%(29명)
대체로 반대	19.6%(22명)
절대 반대	22.3%(25명)

〈表 9〉 어떤 법은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제정 되었으므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

절대 찬성	9.8%(11명)
대체로 찬성	13.4%(15명)
모르겠다	47.3%(53명)
대체로 반대	16.1%(18명)
절대 반대	13.4%(15명)

### 3. 法의 妥當性 및 遵法精神에 관한 意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法이 正義의 原理와 동일시되고 나아가 개인의 行爲의 指導原理로 인식된다면, 법의 葛藤解決 및 行爲操縱의 機能은 크게 발휘될 것이다. 반대로 法이 正義를 대변한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 것이며 그 법을 違反하거나 回避하려는 현상이 일반화할 것이다. 결국 현재의 法이 누구의 法, 어떠한 秩序(whose law? what order?)로 의식하는가는 법의 權威 및 規範的 貫徹力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면, 在所者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51% 가량이 반대의 입장을 취하여 법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半을 넘고 있다. 그러나 또한 11.6%와 10.7%에 이르는 사람들이 “절대 찬성”과 “대체로 찬성”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법의 준수는 반드시 그 妥當性에 대한 確信이 있어도 強制力에 의해 담보되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1/5 이상이 否定的 態度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立法과, 또 한편으로 法執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前記한 林煥燮교수의 연구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sup>(7)</sup> 즉 “법 중에서는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 全國標本은 73.4%, 大學生과 法曹人標本은 86.8%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다수가 法의 否定的 側面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知識水準이 높을수록 이러한 태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梁承斗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법에 대한 不信感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sup> 즉 “악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 1965년의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5.5%가 찬성하였으며 惡法이라 생각하는 법은 전체 표본의 49.8%가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음에 반하여, 1979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惡法이 있다고 생각한 標本은 전체 표본의 7.2%에 불과하였고 또 악법이라 생각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표본은 18.2%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惡法이 없다고 한 표본이 지난 15년간 28.9%에서 86.3%로 약 60%나 증가하여, 法에 대한 不信은 이전보다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이

(7) 林煥燮, 前掲論文, p.46.

(8) 梁承斗, 前掲論文, pp.362~364.

해할 수 있다.

법이 社會生活의 原理로서 얼마나 定着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역시 法의 妥當性·實效性과 關連하여 중요한 문제로 된다. 法을 遵守하는 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생활태도라는 의식이 社會成員에게 대체로 받아들여진다면, 法과 社會와의 調和로운 關係가 造成될 것이다. 그런데 재소자의 25.9%가 “법을 지키면서 세상을 지켜나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법과 “세상”과의 조화로운 關係設定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해 절반 이상이 반대 견해를 표명하여, 이전의 成人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결과에 비하면 오히려 肯定的 側面이 더 강한 편이다.

林煥燮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요즘 세상에는 법대로만 사는 사람은 약삭빠르지 못하다는 평을 듣는 것 같다”는 문항에 대해 全國標本의 57.9%, 大學生標本의 63.2%, 法曹人의 72.1%가 동조하고 있다. 즉 법을 준수하고 법대로 사는 態度보다는 경우에 따라 약삭빠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대동소이한 결과는 李永鎬교수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sup>(9)</sup> “우리 사회에서 법대로만 하다가는 손해본다”는 진술에 대하여 51%가량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3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리 국민의 3사람 중 한 사람이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法秩序가 얼마나 불안정하며 社會秩序와 安定的 基盤이 취약함을 드러내어 준다고 하겠다. 또한 梁承斗교수에 의하면<sup>(10)</sup>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난 15년 사이에 7.4%(1965년)에서 24.4%(1979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원래 선량한 사람들이지만 법의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생활이 각박해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適應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결국 法의 妥當性과 法遵守의 態度에 대해서는 肯定的 立場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그러나 懷疑·否定하는 입장도 여전히 강력하게 殘存하고 있어 법이 社會生活의 指導原理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李永鎬교수의 조사연구 중 “우리 사회에서는 성실한 사람보다 수단이 좋은 사람이 출세한다”는 항목에 대해 62%가 “그렇다”고 응답한 데서도 드러나듯이<sup>(11)</sup>, 誠實보다 手段이 더 補償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한국 사회상이 그러리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法에 대한 尊重重心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순진하게 보일 지도 모른다. 여기서 現象과 認識은 惡循環의 關係를 조성한다. 手段이 좋은 사람이 출세 잘하는 現象은 그에 상응하는 認識을 만들어내며, 수단이 좋은 사람이 출세한다는 認識은 다시 그에 상응하는 現象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법이 자신의 權威를 되찾고, 社會生活의 指導原理로 정착하기

(9) 李永鎬, “韓國人의 意識構造”, 現代社會, 1981. 1, pp.17~19.

(10) 梁承斗, 前揭論文, p.359.

(11) 李永鎬, 前揭論文, p.15.

<表 10> 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 찬성	11.6%(13명)
대체로 찬성	10.7%(12명)
모르겠다	26.8%(30명)
대체로 반대	27.7%(31명)
절대 반대	23.2%(26명)

<表 11> 법을 지키면서 세상을 지켜 나가는 어렵다.

절대 찬성	11.6%(13명)
대체로 찬성	14.3%(16명)
모르겠다	22.3%(25명)
대체로 반대	26.8%(30명)
절대 반대	25% (28명)

위해서는 결국 이러한 「現象—認識」의 累積的 惡循環關係에 강력한 충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IV. 結 論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先行研究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特殊集團으로서 在所者集團의 法意識은 일반 국민의 그것에 비해 두드러진 特色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른 집단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보다 法에 대한 肯定的 態度가 약간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게 주목된다. 그 원인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法에 대한 不信程度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민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는 한 研究<sup>(12)</sup>를 참작하면, 아마도 在所者의 낮은 教育水準도 그 하나의 要因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막연하게나마 法에 대한 態도의 變化를 살펴본다면, 法에 대한 전반적인 意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不條理나 金錢萬能主義·特權主義·便法主義 등 사회 전반의 否定的 價値觀은 더욱 盛行하게 되어 이러한 諸要素들이 다시 否定的인 方向으로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셋째, 在所者集團은 대체로 法 自體보다도 法을 다루고 執行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자체에 대해서도 否定的 傾向이 상당히 보여지나 그래도 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法執行의 不公正性和 不平等性은 일차적으로 法을 執行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식하는 것 같다. 특히 在所者集團의 警察敵對的 態度는 매우 인상적이다. 檢事의 경우 法官과 비슷한 信賴度를 나타냄에 반하여, 警察의 경우에는 否定的 態度가 압도적인 것을 보면 단순히 자신들을 連行·拘束한 사람이 경찰이기 때문에 생기는 不信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찰은 자신의 法執行行爲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努力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과 在所者集團 모두 전반적으로 法規, 法制度, 法執行者에 대하여 否定的 傾向이 강하며 이는 全體法秩序의 權威와 正當性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 사회의 法意識이 그 사회 구성원들의 規範定向을 일정하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社會實際의 規範定向

(12) 金東一, 國民意識의 變化研究, p.117(한국인의 意識과 國家發展, 警察綜合學校, 1982).

과 公式的 規範定向이 대립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곧 그 사회가 病理的 狀態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法이 正義와 동일시되고 法執行者는 곧 正義의 實現者라고 인식되며 개개인이 法을 生活世界의 指針으로 여길 수 있는 狀況 속에서만 法이 權威와 正當性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法秩序 및 그와 관련된 全盤的 文化風土의 재점검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